



제 418회 국회 (임시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감청설비 인가의 취소 사유를 법률로 상향 >

■ 한민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054호)

2024.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감청설비 인가의 취소 사유를 법률로 상향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한민수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8. 21.

다. 회부연월일 : 2024. 8.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감청설비 인가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 감청설비 인가의 취소사유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가 취소의 경우 국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침익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가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등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등 감청설비 인가의 취소사유 및 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신설 및 제6항).

Ⅲ. 검토의견

1. 감청설비 인가의 취소 사유를 법률로 상향

가. 개정안 요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및 제10조 제4항을¹⁾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고 그 뜻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그 밖에 인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함(안 제10조).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第10條(監聽設備에 대한 認可機關과 認可節次) ① ~ ④ (생략) <신설>	제10조(감청설비에 대한 인가 및 인가의 취소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가

1)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 ①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의 인가를 받아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 또는 사용하는 자는 인가연월일, 인가된 감청설비의 종류와 수량, 비치장소등 필요한 사항을 대장에 기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비품으로서 그 직무수행에 제공되는 감청설비는 해당 기관의 비품 대장에 기재한다.

현행	개정안
⑤ 第1項의 認可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를 취소하고, 그 뜻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2. 제4항을 위반한 경우 ⑥ 그 밖에 인가 및 인가의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검토사항

- 현행법 제10조에²⁾ 따르면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국가기관 제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이하 “감청설비 인가”라 함)를 받도록 하고, 감청설비 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2)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 ①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제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인가신청자, 인가연월일, 인가된 감청설비의 종류와 수량 등 필요한 사항을 대장에 기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인가를 받아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 또는 사용하는 자는 인가연월일, 인가된 감청설비의 종류와 수량, 비치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대장에 기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비품으로서 그 직무수행에 제공되는 감청설비는 해당 기관의 비품 대장에 기재한다.

⑤ 제1항의 인가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은³⁾ 감청설비 인가의 취소 사유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임.
- 즉 개정안은 감청설비 인가의 취소 사유 및 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 감청설비 인가의 취소는 국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해 보임.
- 한편 취소는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으로 청문 등 의견청취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행정절차법」 제22조에⁴⁾ 따르면 당사자에게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의견제출

3)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24조(인가의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고, 그 뜻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2. 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자는 인가서를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4)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3.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어 개정안에 항 신설을 통해 이에 관한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통신비밀
보호법 시행령」 제26조에⁵⁾ 따르면 감청설비 인가의 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감청설비 인가의 취소
에 관한 내용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행위로서 법
률에서 정해야 한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이를 수용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228

5)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26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인
가를 취소하거나 법 제10조의5에 따라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
을 실시하여야 한다.